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37回平昌郡議會

第 1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5年 12月 4日(月) 10時00分

場 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場

議事日程(第1次 豫決特委)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選任의件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選任의件
3.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4.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

審査된 案件

- | | | |
|---|-------|-----|
| 1 報告事項 | _____ | 2 面 |
|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選任의件(委員長提議) | _____ | 2 面 |
| 3. 委員長(李洙現)當選人事 | _____ | 3 面 |
|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 _____ | 4 面 |
| 5. 幹事(金斗經)當選人事 | _____ | 4 面 |
| 6.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平昌郡守提出) | _____ | 4 面 |
| 7.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 (平昌郡守提出) | _____ | 4 面 |

1. 報告事項

(10時 00分 開議)

○ 議事係長 威京鎬 : 의사계장 함경호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
른 규정연설에 이어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후 오늘 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1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94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1996년도 예산안이 12일간의 심사일정
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는 다음 '94년도 결산 및 예비
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5일 심사의결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
상훈 위원님의 주제로 위원장 선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職務代行 李相蕪 : 이상훈 위
원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
위원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
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여
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選任의件

(委員長提議)

(10時 03分)

○ 委員長職務代行 李相蕪 : 그러면 의
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경진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이수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 委員長職務代行 李相薰 : 지금 이경진 위원께서 이수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수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수현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수현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委員長(李洙現)當選人事

(10時 07分)

○ 委員長 李洙現 :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위원에게 제2대의회로서 처음 맞는 정기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94년도 결산검사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6년도 예산안이 보다 심도있고, 진솔한 심사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계획된 기간내 원만한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選任의件

(委員長 提議)

(10時09分)

○ 委員長 李洙現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委員 : 간사에 김두경위원을 추천합니다.

○ 委員長 李洙現 : 지금 이경진 위원께서 김두경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두경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그럼 본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김두경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두경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幹事(金斗經)當選人事

(10時 11分)

○ 金斗經 委員 : 덕망과 인격이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본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본 예결위에 심사결정을 특위 위원여러분과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분앞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6.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平昌郡守提出)

7.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平昌郡守提出)

(10時12分)

○ 委員長 李洙現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재무과장 권혁승입니다.

1994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994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괄부분에 있어 일반회계와 6개특별회계중 회계 총예산은 575억8,662만3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32억269만9천원으로 109%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08억8,197만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3억2,072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23억4,732만8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90억6,614만3천원으로 112%입니다.

지출결산액은 483억6,17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7억438만3천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5개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2억3,929만5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1억3,655만6천원으로 79%에 달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5억2,021만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억1,63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75억8,662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8억4,001만3천원으로 112%입니다.

수납액은 632억269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3,7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23억4,732만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3억953만 1천원으로 115%입니다. 수납액은 590억6,614만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4,338만8천원입니다.

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5개특별회계 예산액은 52억3,929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3,048만2천원으로 86%입니다.

수납액은 41억3,655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9,392만6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6개특별회계 총예산액은575억8,662만3천원, 지출액은 508억8,197만6천원으로 78%, 이월액은 109억9,828만2천원, 불용액은 300억368만5천원이고, 예산현액은 648억8,394만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23억4,732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483억6,176만원으로 81%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92억152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20억8,136만원이고, 예산 현액은 596억4,464만8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5개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2억3,929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25억 2,021만6천원으로 48%이고, 이월액은

17억975만4천원입니다.

불용액은 9억2, 232만4천이고, 예산현액은 52억 3,929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와 6개특별회계 총잉여금은 123억2,072만3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35건에 24억8,564만6천원이고, 사고이월 47건에 65억6,313만6천원, 계속비 1건에 11억9,950만원, 보조금 잔액은 9,268만1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9억7,9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07억438만3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33건에 15억8,546만6천원 사고이월은 44건에 64억1,638만2천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1억9,950만원이며 보조금잔액은 9억268만1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4억1,017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총16억1,634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2건에 9억, 사고이월 3건에 1억4,675만4천원, 계속비와 보조금 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억

6,9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과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수현 의원과 김종득, 김성래 황원섭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95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수검한 결과 27개항이 지적되어 해당실과소에 통보하여 처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된 대로 최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결산서를 참조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洙現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1994년도 평창군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는 5억8,104만8천원이며,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분야에 예산업무보조원 퇴직금 7건에 8,231만2천원, 사회복지비 구분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2건에 1,571만3천원, 산업경제비 부분에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한 피해작물대과대의 2건에 6,678만2천원, 지역개발비 부문에 급수시설 피해복구 사업비의 2건에 2억3,129만2천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17건에 3억9,610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용

은 첨부된 예비비승인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洙現 :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 參 照 >

1. 1994年度平昌郡歲入歲出決算檢查結果
意見報告書
(끝에 실음)

.....

다음은 신고선 전문위원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辛敎善 : 전문위원 신고선
입니다.

1994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련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개요에 있어
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
산 총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523억

4,700만원과, 특별회계 52억3,9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이 575억8,6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63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가
되겠고, 예산현액은 '94년도 예산과 전년
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523억4,700만원과, 특별회계
52억3,9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은 575
억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50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109억9,800만원이며, 불용액은 30억 4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처리는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를 포함해서 세입결산액이 632억300
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8억8,200만원
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23억2,100만원
으로서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24억
8,600만원, 사고이월이 65억6,300만원
계속비이월이 12억, 국고보조잔액이 9,3
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억7,9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사항은 9건에 9,600만원을 전용하여 전체 예산액은 6억4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평창문화예술회관건립 1건으로서 13억원이 년부액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출액은 1억만 되어 있고 나머지 년부액은 별다른 이상없이 넘어 왔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 83건에 191억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79억9,200만원, 이월액은 10억250만원, 불용액은 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했을때, 49억6,600만원이고, '94년도에 채권액이 발생한것은 5억800만원, 소멸된것은 11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94년도 현재로서는 42억8,8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증감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년도말 채무액은 97억2,7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발생한것이 4억6,500만원, 소멸된 것이 12억400만원이며, '94년도말 현재액은 89억8,800만원이며, 전년도를 대비했을때 7억3,9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194억5,600만원으로 평가되며, '94년도말로 보았을때 193억5,400만원으로서 1억200만원이 전년 비해서 감소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기금현황에 있어서는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로서는 7,300만원, 당해년도 현재액으로는 9,3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체 17건에 지출결정액 3억9,600만원이며, 지출액도 역시 동일

합니다.

이내용은 보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각세
입종류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목표액 60억300만원이며, 징수액은 65억
5,800만원으로써 6%의 증수실적을 거두
었는바, 증수분포는 주민세를 비롯한
전체 세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반영된것으로 판단
되며, 징수결정이 된후 미수납된 금액중
에서 결손처분액 200만원을 제외한 4억
7,5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한것은 예년
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써 열악
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할때 보다 더 적극
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의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52억7,500
만원대 징수액은 127억2,700만원으로서
141%를 증액 징수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이월금 예산현액 72억9,700만원이 포함

된 금액으로써 실제 징수결정액 134억9,
300만원에 비하면 94%의 징수실적을 보
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7억6,500만원이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216억9,000만원중
중액교부금 1억6,400만원이 내시만 되고
교부가 되지 않았으며, 지방양여금 예산
액 45억6,200만원은 전액 수납이 되었습
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145억3,600만원 대비
139억4,8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수납되
었고, 미교부된 5억8,800만원은 '95년도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차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예산액 3억원은 도암면 청
사 신축비로 차입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차입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반회계 세입은 총액규
모면에서 예산액보다 일부 미징수 되었
으며, 이중 채무자 거소불명 및 재력부
족등에 대해서는 세입금 불납결손대상으

로서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적극적인 검토와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세입부문은 대부분 수궁이 되는 사항들이므로 '94년도 세입결산은 무난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596억4,400만원에 대하여 82%인 483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95년도 이월액 92억100만원을 차감하면 3.5%에 해당하는 20억8,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비율로 볼수 있으나, 불용액 발생원인이 대부분 경상경비 위주의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이어서 건전재정 운영에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각항목별로 예산대 결산액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14억1,000만원이고, 잉여율은 2.4%로써 예년 평균적인 추세이며, 전액 95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9개과목에서 총10건에 9,5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바, 대부분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전용 기준을 준수하였으나, 광천수개발사업비와 쓰레기처리시설에 관련한 처리용기 구입과 롤온박스수리비 증당등의 예산액을 전액 전용한것은 50%이상 과다하게 전용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등 전용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대부분 년도말 예산 편성 또는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며, 그외 계속비, 채권 및 채무 증감내역, 공유재산 증감 및 기금 현황등 별다른 이상은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17건에 3억9,600만원을 지출 한바 재해복구지원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들로써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함이 타당한 것들이었으며, 특히 봉평, 진부 상수도 설비용역비 2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당시 사업추진에 따른 정황등으로 판단해 볼때 다소 수궁이 가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예비비 지출대상이 아님을 알고 고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건전 재정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행정업무보조원등 일부 일용인부 퇴직금의 경우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형태로서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운용 및 절감은 연간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과목별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을 억제하여 7억7,500만원을 절감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절감목표액 7억8,400만원에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서 절감액에 상응하는 사업선정 시행없이 불용액화한 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향후 전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기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느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가 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상수

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액 41억3,600만원중 지출액 25억2,000만원과 익년도 이월액 10억4,600만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5억9,600만원으로서 대부분 각 회계별 사업비 집행잔액이나,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재원없이 명목상으로 이월한 7억5,000만원을 포함하면 실지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1억8,00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미교부된 7억5,000만원은 '95년도에 전액 교부 된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봉평, 진부상수도 확장공사의 명시이월비 16억5,000만원과 대화상수도 취수원 포장외 2건의 사고이월비 1억4,600만원으로서 대부분 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진부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 명시이월은 도비보조금 7억5,000만원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의 확보 없이 서류상으로 이월처리 된것으로 적

정치 않은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국내차입금 이자 및 원리금상환에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것은 지방채상환 계획등 사업추진에 대해 적정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새마을소득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 총 예산액 72%가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과 건전재정운영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의료보호기금, 농공지구조성및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결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
○ 委員長 李洙現 : 신고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봉평 진부상수도 설계용역비 2억원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는데, 여기는 사실 지출이 안될 부분인데, 지출이 될만한 급박한 일이 있었는지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봉평상수도 사업 확장과 진부상수도 확장사업으로서 총 59억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봉평상수도 34억, 진부상수도 25억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보광에서 25억을 부담하여 토특기채사업, 군비를 합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당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광에서 부담계획이 있었고, 기채사업을 승인 하기 위해서 총사업 설계를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 니다마는 보광에서 부담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기채승 인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비에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지금 그렇게 미리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50억을 봉평과 진부 상수도 용역비로 지출하셨는데, 진부같은 곳은 미리 사업 결정이 되었는데, 설계용역비가 사전에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봉평상수도에 대한 25억원은 보광에서 어떻게하기로 결정이 되었나요?

○ 企劃室長 申大松 : 25억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지금 설계가 다 되고, 25억이 군청 세입이 잡혔나요?

○ 企劃室長 申大松 : 아직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럼 아직도 군에서 계획만 되어 있지 봉평과 보광이 계획된 상수도는 아직 자세한 사업부분의 추진이 아직도 안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 財務課長 權赫昇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약서까지 다 되어 일단 1차로 봉평상수도에 대해서 12월 1일자로 20억이 군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20억 납부를 일단 했습니다.

2차, 3차 세입은 그쪽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상수도 업무추진에 따라서 납부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金鍾永 委員 : 설계용역비는 일단 세입이 잡힌 후에 일단 용역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안해야 될 예비비에서 2억원씩 지출을 합니까?

사전에 지출해서 설계용역비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자금사정에도 문제점이 왔다고 하는데,

○ 企劃室長 申大松 : 봉평상수도는 보광부담도 있지만, 토특기채사업을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고, 진부상수도는 농특기채사업을 포함하여 국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사업을 승인신청 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설계를 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보광과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도 총사업비가 나와야만 보광 부담이 얼마라는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미리 하게 되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洙現 : 위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후 11시 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時 45分 停會)

(11時 00分 續開)

○ 委員長 李洙現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94년도 결산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委員 :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목표액 60억300만원에 징수액이 63억 5,800만원, 결손처분액 200만원을 빼면 4억7,500만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하는데, 돈낸 사람만 손해를 보

는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이부분의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결손처분을 할 사항이 아닌데, 주로 거소 불명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세 이의 신청에 의하여 패소한 경우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거소 불명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고, 지금도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액의 금년도분이 6억, 작년도분이 12억, 과년도분이 12억해서 18억이 체납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10억을 체납하고 있는데, 그 10건이 모두 소송내지 이의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 劉燾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광천수개발사업, 쓰레기시설, 룰은박스 수리비 총당의 예산을 과다하게 50%이상 전용하여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런처리 는 어떻게 전액 전용을 하여 불용액이 생기도록 했습니까?

전액하게된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 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비에서 우리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우리 평창군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여 집행부에서 공적을 위 해 영결식을 해주는것까지는 좋은데, 돈은 절대 예비비에서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이 나갔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냥 예비비지출 승인을 하는걸로 한 다면, 이런 얘기가 앞으로 우리 군민의 귀에 흘러 간다면 우리의회에서 무능함 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 변해 주시고, 또 군수 포괄사업비도 우 리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야 하는데, 타 기관 울타리를 해 주었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우리가 예산 심의에서 짚고 넘어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 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안하겠다고 하는 예산 심의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지, 아

면 이런 일이 과연 지출한 부서에서 알 면서 지출동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 서 지출을 안하면 도저히 안될 이유가 있었는지에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 다.

○ 企劃室長 申大松 : 먼저 국회의원 심명보의원 영결식에 대한 지원금은 사 실상 평창군민이 뽑아준 일꾼이고, 그 분이 남긴 공적도 있고, 그분이 평창을 통과하면서 노제를 한다는 통보가 있었 기 때문에 부득히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 劉燾文 委員 : 본위원이 생각 한것은 그러한 뜻이 있는것까지는 이해가 가는 데, 차라리 그돈을 군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하면 우리군에서 더 그분을 생각 하고 그분이 했다라는 위상을 도와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뜻이 더 담겨 있을 터 인데,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것은 경리 를 보는 담당부서에서 많은 잘못이 있다 고 지적을 안할수 없습니다.

군수 업무추진비로 그정도는 지출하고도

충분히 남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두말 할것도 없이 잘못입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내용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포괄사업비에서 타기관 울타리 사업을 해준 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림면 운교지서가 삼거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담장이 너무 노후되어 그당시 경찰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방범활동 하는 과정에서도 보기도 싫고 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이런 사업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는데, 방림 42번 국도가 바로 멧둔제 터널있는 42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관장할 관할 관서 미탄

면사무소는 12년전에 지어 지금 국도변에 미화를 지적할 정도로 담이 없어요. 그것도 보안을 생각한다면 면사무소 울타리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방림운교지서가 미탄면사무소보다 지은지가 더 나중인데 먼저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완전하게 면사무소 울타리가 어디가 안되어 있는지 파악을 안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그런 면사무소 울타리가 없는데서 부터 군수포괄사업비가 나가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알겠습니다.

먼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미탄면사무소 울타리 관계는 미탄면사무소에서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없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유돈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미탄면과 상의를 하여 뒷부분에 울타리를 해야 하는것을 판단하여 꼭해야 한다면 예산을 계상하여 담장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劉燉文 委員 : 50%만 해도 불용액이 안생기는데, 100% 다해서 불용액이 생겼는지 답변을 안했습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광천수연구개발비는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했습시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안하면 사업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206이라는 과목에서 404로 불가피 과목을 변경 한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대책 물은박스구입비 2,000만원은 당초에 물은박스를 구입했는데 물은박스가 사실상 더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가 평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진부, 도암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는 바람에 아파트에 다중 집합장소에 분리수거용 박스를 구입하다 보니까 목을 변경한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전용이 되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100% 전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목만 변경 한것입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한테 '9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류가 의회에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그것은 재무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95년 8월 30일자로 제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8월 30일자로, 동료 위원들이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문하였기 때문에 본위원이 매년 예비비를 심사할 해 봅니다마는 예비비 지출은 쓰고 싶으면 쓰는 정도로 일관성 없이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 17건에 대한 명세가 나와 있는데, 당초 기본 예산편성을 할수도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두었다가 급하지 않는 사항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과거에는 수해라든가 한해, 기타 긴박한 사항이 발생했을때에 본예산에서 계상이 않은 사항중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내용상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하여 지출했어야 마땅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행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하여 예산을 계상하여 예비비 지출을 억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그다음 두번째, 지방양여금 예산이 45억 6,200만원이 본군에 내려오는데, 지방양여금을 우리 의회 의

원들이 이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에서 얼마가 내려오는지, 분기별로 내려 오는지, 내용은 전혀 모르고, 사업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전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하나의 예인데,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명년도부터는 우리 의회 의원들도 양여금에 대해서 대략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도는 사전에 간담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네, 알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을 적용을 받는데, 재원 및 규모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이란다가, 규모를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초과이득세에 50%, 주민세에 80%, 전화세 100%를 양여금 재원으로 확보하여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하여 일반 교부세를 산정하는 식으

로 해서 산정을 하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네가지 항목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투자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간담회시 의원님들한테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그다음 세번째, 명시이월이 여기 자료에 나온것을 보면 32억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명년도부터 예산편성을 알뜰하게 세워서 당해 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고, 또 이것이 명시이월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발생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32억, 어떤해는 50억씩 발생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을 적게 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 企劃室長 申大松 : 명시이월은 예산이 계상된후에 설계를 못했거나, 또는 그해 년도에 사업을 완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때에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명시이월 한것을 보면 거

의가 마지막 추경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많습니다.

2회추경 이후에 물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몇건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토지보상 협의가 안됐다든가,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가 3회추경에 집중적으로 국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불가피, 공기가 짧아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듬해로 넘길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다음 사고이월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단 사업을 착수해 놓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다음해로 넘어 갔는데, 사고이월 조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모두가 추경때 국도비가 변경 되었다든가, 그다음 신규로 내시가 되었다든가 이런 사항 사업들을 주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례들입니다.

○ 李相薰 委員 : 마지막으로 지방수입 차원에서 금고 검사한 결과를 우리 평창군은 지금 현재 대부분 농협에 예치를 하는데, 우리 평창군의 수입성이나,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금고 운영은 제1 금융기관, 금고 계약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고 계약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은행법 제3조에 시중은행, 농협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인 조합이 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강원은행, 농협군지부밖에는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액이 군단위는 250억이상 시단위는 5,000억이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농협과 강원은행밖에 없는데,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날 계약하여 내년도 12월말까지 금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희자금의 이용은 우리가 유희자금 1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출이 안되면 우리가 은행에 넣어서 이자액을 늘려야 하는데,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금고로 계약된 금융기관에 한해서 예치를 할 수 있지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를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서 그런가 하면 금고계약을 할 때 평창군의 재무회계운영상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금고가 전액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중간에 어떤 회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금고가 책임전다는 얘기입니다.

불성실한 공무원이 있어서 자기도장으로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찾아서 행방을 감추었다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금고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질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평창군이 금고 유희자금 110억을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리고 양도성 예금증서로 불리우는 CD, 이렇게

세가지로 불리 하여 입금을 시켜서 이자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분산 입금시켰을 경우에 재무과장이나, 쉽게 얘기해서 이자금을 관리하는 징수계장이나, 이사람이 축협이나 신탁에 가서 돈 인출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금융기관들은 책임을 못 집니다.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한 곳에 이자가 낮더라도 불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사실상 이자도 그렇게 낮은 형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 분석해본 결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각 금융기관별 여신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별 이자의 분포라든가, 또 상품명별로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입니다.

○ 劉燾文 委員 :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현금을 만지는 직원들한테는

재산보증 같은 것은 없습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저희가 현금을 만지거나 그렇지 않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보증을 하는것은 신용보증이지, 저희가 연간 관리하는 돈이 약 70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담보 성격의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劉燾文 委員 : 통장 이름은 전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 財務課長 權赫昇 : 평창군 수입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수입원 한사람 이름으로요?

○ 財務課長 權赫昇 : 예

○ 劉燾文 委員 : 인감도 수입원 그분 것으로 등재 되어 있습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예

○ 劉燾文 委員 : 금고에 등록된 인장하고 통장은 한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그렇습니다.

○ 劉燉文 委員 : 법으로 한사람이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그렇습니다. 저희는 편의상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까지도, 저희가 통장관리까지도 매월 한번씩 확인만 하지 평창군 금고에 다 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통장을 직접 안가지고 있고요?

○ 財務課長 權赫昇 : 그리고 자금의 흐름만 매일 일계표로 받고 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그것만 받습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금고에서 받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불용액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복리후생비에서 모범공무원 효도관광 350만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데,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 추진해서 언제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맞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94년도에 모범공무원 효도관광비로서 내무과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당시 시기를 잘못 잡아서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계획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 企劃室長 申大松 : 그당시 손해가 나서 그 계획을 세웠다가 좋지 않다고 하여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다음에 잔류염소측정기 구입문제는 평창상수도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 예산에 100만원, 120만원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이런것은 왜 사지 않았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잠시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

들에 대한 질의인데, 자료가 올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그관계는 간이상수도 업무가 그당시 사회과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도시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이관 되다 보니까 기존 있는 도시과에서 일반상수도에 예산이 있던것으로 구입을 함에 따라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것입니다.

하지를 앓은 것은 아닙니다.

○ 李慶鎮 委員 : 쓰레기감량사업비로 선별보관창고에서 시설 설계비용으로 100만원, 이 내용은 창고를 지을때 신고사항으로서 처리할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계비를 세웠다가 안쓰셨는데, 세우시는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 企劃室長 申大松 : 당초에는 실시설계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사항으로서 면적이 축소 되다 보니까, 건축직 공무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니까 불용액으로 미집행 된것입니다.

○ 李慶鎮 委員 : 그런 부분은 신중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건축심의위원회 여비 보상 50만원,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50만원 지출을 안하셨는데, 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 위원회들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데 실적이 왜서 없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건축심의 위원회 실적관계 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무리인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해당과에 통보하여 서면으로 실적관계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慶鎮 委員 : 실적문제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견인대행수수료240만원, 이런 문제도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한 실적이 없어서는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실적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집행이 안되었는지?

○ 企劃室長 申大松 : 240만원 말입니까

○ 李慶鎮 委員 : 240만원,

○ 企劃室長 申大松 : 그것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공업사에서 견인을 해 가면 대행료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당시는 대행료를 주지 않고, 일반차에 다 운반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분석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40만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종 교재발간 사항들이 있는데, 이교재 발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거라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내용이 변경되었다든가해서 안되는 겁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소방관리 말입니까?

○ 李慶鎭 委員 : 예

○ 企劃室長 申大松 : 소방장비 일부가 소방과출소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 있다가 소방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 된 것입니다.

○ 李慶鎭 委員 :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노인복지 5,000만원,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으로 서 있는 것은 공설묘지 실시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서 있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기타사항이 도와 협의가 당시에 이루어질것으로 예상하여 5,000만원을 세웠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도와 각종 행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이상입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추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을 보면 총건수 900건중에 징수가 371건, 미징수가 529건입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800만원정도 징수 되었고, 1,500만원이 미징수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징수가 안되는지 미징

수건에 대한 처리사항하고, 추후 징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申大松 :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일단 적발이 되면 스티가를 발부하여 일단 사무실에 와서 차적 조회하여 관내 차량 같으면, 관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지차량 같으면 해당 시군에 협조를 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우편 또는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납이 되어 있을때에 가산세라는게 없습니다.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스티가를 발부 받은 자도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내지 않습니다.

관내에 있는 차량 같으면 읍면 사무소 재무계에서 징수 동결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이나, 타도의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시군과 협조를 해

서 안내는 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대해서도 안내는 차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압류를 해 놓았고, 타도에 있는 것도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본인이 차를 매도 한다든가, 폐차를 한다 할때에는 반드시 등록처에 와서 서류를 발급 받게 됩니다.

발급 받을때 압류가 되어 있으면, 발급이 안됩니다.

그당시에 거의 냅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법이 개정되어 과태료도 몰리고, 타시도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징수 실적이 부진합니다.

○ 金鍾永 委員 : 자동차 한대를 사고 팔자면 몇년씩 가야 하는데, 압류효과가 계속 있나요?

○ 企劃室長 申大松 : 압류는 일단 자동

차가 등록이 되어 그것이 없어질때까지 압류는 돈을 안내면 지워 지지 않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러면 수년이 흘러 가겠네요?

○ 企劃室長 申大松 : 그러다 보니까 득측장도 발부하고, 저희들도 타도에서 협조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협조를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불이라든가 이런 차량이 많습니다.

그다음 본인이 차량을 아무곳이나 방치해 놓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해 정비공장에 갖다 놓고는 본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단속을 해도 별효과가 없겠네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조금전에 이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심의 위원회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15층 이상 허가 신

청이 있을 때에는 허가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그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를 열지 않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데, 농촌지도소 예찰부산물 매각대금,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286만8,475원 사업장 생산수입인데, 잡수입으로 불입 정리되었다는 문제를 볼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지도소 예찰법 부산물 매각 대금으로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을 잡수입으로 잘못 세입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착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숙지를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생활보호 적립기금이 대장에 미비되고, 기금 출납 명령과 출납 공무원이 미 임명

되어었는데, '95년도에는 임명하고, 대장을 비치했습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이것은 지난번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즉시 조치를 한후에 우리 재무과로 통보를 하도록 하여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즉시 조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대장도 마찬가지입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예, 이것은 기금 출납명령은 사회과장이고, 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즉시 조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조치를 했으면 조치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 財務課長 權赫昇 : 예,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예산 현액에서 예산액 나머지 72억 8,800만원이 93년도 이월 사업비입니까?

'94년 예산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

한 것이 예산 현액이라고 했는데, '93년도 이월사업비가 72억8,800만원 정도 됩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분입니다.

○ 禹康鎬 委員 : 결산상 잉여금처리,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주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사고이월은 사업을 일단 착수해 놓고, 천재지변이라든가, 공사장의 현지 여건에 의하여 공사를 계획했던 것을 연내에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 다음년도로 넘겨 공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착수한후에, 발주한 후가 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5년도 사업중에서도 11월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고이월된 금액 65억6,300만원인데, 95년도 집행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사고이월된 건수에 대해서는 '94년에 사고이월 된것은 '95년도에 추진중에 있고, 아직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어느 실과소에 사업이 안된것이 있는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사고이월되었던 것은 다시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실과에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사고이월이 다시 안된다면 만약에 사고이월이 될 수도 없겠지만 공사가 년내에 마무리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그러면 관계 해당되는 실과에서 일단 분석을 해서 안되었을때는 사업을 착수해 놓고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지금까지 손을 안대었느냐등 여러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분석을 해서 그런일이 없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계속사업비 아니면 그런일이 없을 겁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명시이월이 되었

던 사항은 당해년도에 다시한번 사고이월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건수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연말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이라든가, 이런사업들이 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챙겨주시고, '95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9이상저온현상피해작물대파대지원과 벼물바구미대파대지원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어느정도 도비 지원과 군비지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서류가 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네,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이상저온현상 피해작물대파대지원과, 벼물바구미대파대지원에 관한 도에서 내려온 도지침을 포함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 企劃室長 申大松 : 네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중액 교부금 내시만 되고, 교부가 되지 않았는데, 1억6,400만원, 교부되지 않은 주된 사유가 뭐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지방교부세는 내 무부에서 일정액을 산정한후에 월별로 일정 비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가 지나기 전까지 해당되는 지방교부세 전액이 교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중액교부금인데요,
- 企劃室長 申大松 : 중액교부금도 포함해서 그해 년도에 결정되었던 교부세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회계년도안에 교부가 됩니다.
- 禹康鎬 委員 :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총예산액의 72%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산편성도 물론 잘못되

었겠지만, 실시 사업부서에 원인행위라든가, 이런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무려 72%가 불용처리 되었으면 사업을 안했다고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새마을소득금고 2억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난 특별회계는 사실상 사업소관의 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회진흥과장도 그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사업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월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불용액으로 처리된 72% 전체가 2억입니까?

총예산액의 72%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72%가 2억입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전체 2억7,917만 7천원이 전체 예산이고, 그중에서 7,857만원이 지출 되고, 2억60만7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洙現 : 위원 증식을 위하여
정회한후 13시에 30분에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 停會)

(13時 45分 續開)

○ 委員長 李洙現 : 좌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
니다.

오전에 이어 '94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앰블런스 차
정수가 2대 였는데, '94년도 보유현황이
3대, '95년도 보유현황이 3대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정수가 2대이고, 금액차이도
1,20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되었는데,

○ 財務課長 權赫昇 : 몇페이지인지

○ 金斗經 委員 : 170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세입세출결산서에 있습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그것은 제가 자료
를 안가지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 목별로 결산액을
보면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원
인행위를 하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 한것이 대략 46건
으로 보는데, 이 불용액 처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266만4천원은 소
각시설을 해놓고, 완전히 가동되었을때
에 연료비를 써야 하는데,

소각시설이 가동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
에 가동을 예상하여 계상을 하였는데,
소각시설이 가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
산이 남은결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402도 재활용품 선
별창고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체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100만원이 그대로

남았고, 주로 그런것 같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일일이 설명을 안받아도 좋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의 적정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시정을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김두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앰블런스에 대해 말씀 드리면 우리군의 정수는 앰블런스가 2대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재난방지 긴급환자수송으로 도비로 1대를 사서 도정수로 저희한테 내려보내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정수를 저희가 하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차량 1대가 더 있기 때문에 정수가 1대 더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洙現 : 보충질의 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승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2건의 의제에 대하여 심사 의견을 종합한바 전 위원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합의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원안 의결한 '94년도결산및 예비비승인과 관련하여 두분 실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재무과장 권혁승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을 담당하는 우리 재무과는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때 지적된 27개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즉시 개선내지 보완시행할것을 약속 드리면서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게 심사하여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질책해 주신데 대하여는 예산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값진 교훈으로 받아들여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 중요한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등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洙現 : 이상으로 1994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그럼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00分 散會)

○ 出席委員

委員長 李 洙 現

幹 事 金 斗 經

委員 李 慶 鎮

委員 劉 燉 文

委員 李 相 薰

委員 禹 康 鎬

委員 金 鍾 永

○ 委員아닌 議員

議 長 金 樂 雲

○ 出席公務員

企劃室長 申 大 松

財務課長 權 赫 昇

○ 議會事務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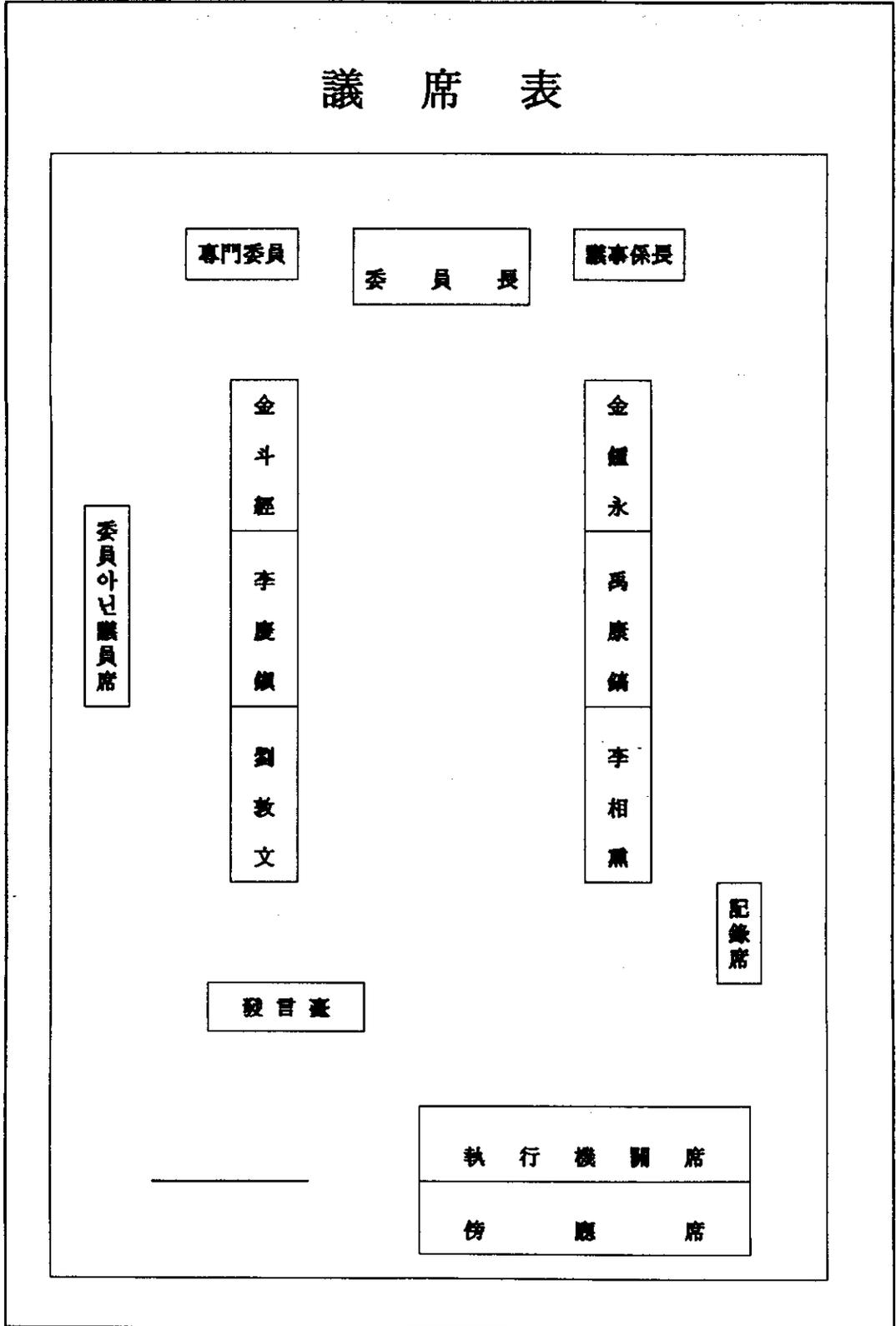
專門委員 辛 敎 善

議事係長 咸 京 鎬

【 議 席 】

○ 議席表(115 面に 실음)

議 席 表



1994年度平昌郡歲入・歲出決算檢査結果意見報告

□ 개 요

- 檢査기간 : '95. 7. 20 ~ 8. 8 (20일간)
- 장 소 : 평창군청 자료실
- 대 상 : 12개기관(군본청, 사업소, 읍면, 의회)
- 檢査인원 : 4명
 - ┌ 대표위원 : 이수현 의원
 - └ 위 원 : 김종득, 김성래, 황원섭
- 結果보고자 : 대표위원 이수현 의원

□ 檢査結果

- 실시방법 : 지방재정운영전반에 걸친 일반적 檢査로 結算관련 증빙장부, 과목별 계수상호대조, 계산검정,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을 검토
- 檢査사항 :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結算, 체권 및 채무의결산, 재산 및 기금의 結算, 금고의 結算등
- 檢査의견 : 세입예산현액 648억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2억300입. 세출예산현액 648억8,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8억8,200만원 이고, 그 차인잔액은 123억 2,100만원으로 이중에는 명시이월 24억 8,600만원, 사고이월 65억 6,300만원, 계속비 이월 12억원, 보조금집행잔액 9,300 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9억 7,900만원으로서 잉여율은 4.3%로 과거 3개년 평균 3.6%에 근접되므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할 수 있음.

1994년도 결산에서는 각종 국도비보조금들이 출납정리 기한인 '95년 3월 10일까지도 교부되지 않으므로 결산상 세입결함을 초래케 한것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들임 이밖에 예산운용과 절감 현황, 지방세입현황, 예비비지출현황등, 결산검사를 통하여 부적정하게 처리된것으로 인정되어 지적한 사례는 총 27건으로 지적 사항별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함.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檢 討 報 告 書

1. 所管

가.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나.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

2.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1995년 8월 30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5. 12. 4)

3. 決算및豫備費支出概要

가. 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 세입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정 수 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계	결손처분	이 월
계	57,586	64,884	64,840	63,203	1,637	2	1,635
일반회계	52,347	59,645	60,310	59,060	1,244	2	1,242
특별회계	5,239	5,239	4,530	4,137	393	-	393

※ 특별회계(6) : 상수도,주택사업,의료보호기금,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 예산현액은 '94년 예산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것임.

○ 세출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익 년 도 이 월 액	불용액
계	57,586	64,884	57,445	50,882	10,998	3,004
일반회계	52,347	59,645	54,778	48,362	9,201	2,081
특별회계	5,239	5,239	2,667	2,520	1,797	923

○ 결산상 잉여금처리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세 계 잉 여 금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국 고 보 조 잔 액	순 세 계 잉 여 금
계	63,203	50,882	12,321	2,486	6,563	1,200	93	1,979
일반회계	59,066	48,362	10,704	1,586	6,416	1,200	93	1,410
특별회계	4,137	2,520	1,617	900	147	0	0	569

○ 예산전용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용 감 액		전 용 증 액	
		건 수	감 액	건 수	증 액
계	604	9	96	10	96
일반회계	604	9	96	10	96

※ 특별회계 해당 없음

○ 계 속 비

· 사업명 :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1건

(단위:백만원)

년도별	년 부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비 고
93	800	-	800	100	700	-	
94	500	700	1,200	-	1,200	-	
계	1,300	-	-	100		-	

○ 차년도 이월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83	19,162	7,992	10,250	920	
일반 회계	소 계	78	17,182	7,850	9,203	129
	명시이월	33	1,586	0	1,586	0
	사고이월	44	14,396	7,850	6,417	129
	계속비이월	1	1,200	0	1,200	0
특별 회계	소 계	5	1,980	142	1,047	791
	명시이월	2	1,650	0	900	750
	사고이월	3	330	142	147	41

○ 채권증감및 현재액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전년도말	'94 년도		'94년도말	전 년 대 비 증 감
		발 생	소 멸		
계	4,966	508	1,186	4,288	△ 678
일반회계	83	76	75	84	1
특별회계	4,883	432	1,111	4,204	△ 679

○ 채무증감및 현재액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전년도말	'94 년도		'94년도말	전 년 대 비 증 감
		발 생	소 멸		
계	9,727	465	1,204	8,988	△ 739
일반회계	3,030	168	260	2,938	△ 92
특별회계	6,697	297	944	6,050	△ 647

○ 공유재산 증감및 현재액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전년도말	'94 년도		'94년도말	전 년 대 비 증 감
		증	감		
계	19,456	56	158	19,354	△ 102
행정재산	10,814	46	56	10,804	△ 10
보존재산	-	-	-	-	-
잡종재산	8,642	10	102	8,550	△ 92

○ 기 금 현 황

(단위: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현재액	증 감 액		당해 년도 현재액
		수납액	지출액	
계	73	29	9	93
생활보호기금	11	1	-	10
저소득주민자녀 장 학 금	62	28	9	81

나. 豫備費支出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불용액	지 출 일 자
계 (17건)	396	396	396		
1. 토지과표업무보조원 퇴직금	1	1	1		3.2
2. 행정전산업무보조원 퇴직금	1	1	1		4.19
3. 환경미화원 퇴직금	9	9	9		6.13
4. 고 심명보의원영결추모식경비 지원	2	2	2		6.17
5. 5.19이상저온현상피해작물 대파대지원	37	37	37		6.27
6. 벼물바구미대파대지원	8	8	8		6.27
7. 고 최친찬부군수유족 보상	63	63	63		6.27
8. 94.6.30-7.1 간이급수시설 피해 복구사업지원	1	1	1		8.2
9. 94.6.30-7.1 수해복구사업비 지원	30	30	30		8.6
10. 농산물가격정보및농사정보 정보응답기설치(낙퇴복구)	22	22	22		"
11.공무상요양비(오경환)	2	2	2		8.11
12. 일용인부퇴직금(장희규)	2	2	2		9.6
13. 일용인부퇴직금(김선희)	6	6	6		9.27
14. 봉평,진부상수도설계용역비	200	200	200		9.27
15. 일용인부퇴직금(이길화)	2	2	2		12.1
16. 공무상요양비(전재구)	5	5	5		12.15
17. 재활용품수집장려금지급	5	5	5		12.29

4. 전문위원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부문

○ 각세입종류별 세입내역을 분석한바에 의하면

- 지방세는 목표액 60억300만원대 징수액은 63억5,800만원으로써 6%의 중수실적을 거두었는바 중수분포는 주민세를 비롯한 전체 세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반영된것으로 판단되나,

징수결정이 된후 미수납된 금액중 결손처분금액200만원을 제외한 4억7,5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한것은 예년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한것으로써 열악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하여 보다더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임.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52억7,500만원대 징수액은 127억 2,700만으로서 141%를 증액징수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이월금 예산현액 72억9,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써 실제 징수결정액 134억9,300만원에 비하면 9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7억6,500만원이 미수납된 사항임.
-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216억9,000만원중 증액교부금 1억6,400만원 이 내시만 되고 교부가 되지 않았으며
- 지방양여금 예산액 45억6,200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음.

- 보조금은 예산액 145억3,600만원 대비 139억4,8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수납되었고 미교부된 5억8,800만원은 '95년도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임.
- 국내차입금 예산액 3억원은 도입면 청사신축비로써 실제 차입행위는 없었음

○ 일반회계 세입은 총액규모면에서 예산액보다 일부 미징수되었으며 이중 채무자 거소불명 및 재력부족등에 대해서는 세입금 불납결손대상으로써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적극적인 검토와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임.

○ 기타세입부분은 대부분 수궁이 되는 사안들이므로 '94년도 세입결산은 무난 한것으로 사료됨.

나. 일반회계세출부문

○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596억4,400만원에 대하여 81%인 483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95년도 이월액 92억 100만원을 차감하면 3.5%에 해당하는 20억 8,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년과 비슷한 비율로 불수 있으나 불용액 발생원인이 대부분 경상경비 위주의 예산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이어서 건전재정 운영에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볼수 있는 사항임.

○ 각항목별 예산대 결산액을 분석한바에 의하면

-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은 14억 1,000만원이고 잉여율은 2.4% 로써 예년 평균적인 추이이며 전액 9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임.
- 예산전용은 9개과목에서 총 10건에 9,5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바 대부분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전용 기준을 준수하였으나 광천수개발사업비와 쓰레기처리시설 관련한 처리용기 구입과 물은박스수리비 증당등의 예산액은 전액 전용함은 물론 50%이상 과다하게 전용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등 전용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사항임.
-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대부분 년도말 예산편성 또는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외 계속비, 채권 및 채무 증감 내역, 공유재산 증감 및 기금현황등 별다른 이상을 지적할 수 없었음.

○ 예비비는 총 17건에 3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재해복구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들로써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함이 타당한 것들이었으며 특히

- 봉평·진부상수도 설계용역비 2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당시 사업추진에 따른 정황등으로 볼때 다소 수궁이 가는 사항이나 예비비 지출대상이 아님을 알고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에 역행을 하는것이라 사료됨.

- 또한 행정업무보조원등 일용인부 퇴직금의 경우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형태로써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임.

○ 예산운용 및 절감은 연간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과목별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을 억제하여 7억7,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이는 절감목표액 7억8,400만원에 거의 근접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볼수 있으나, 절감액에 상응하는 사업선정 시행없이 불용액화한 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향후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기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로

- 세입결산액 41억3,600만원중 지출액 25억2,000만원과 익년도 이월액 10억4,600만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5억6,900만원으로 대부분 각 회계별 사업비 집행잔액이나, 이중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재원없이 명목상으로 이월한 7억5,000만원을 포함하면 실제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1억8,00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된다고 할수 있음.

이것은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미교부된 7억5,000만원은 95년도에 전액 교부 되었음.

-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봉평·진부상수도 확장공사의 명시이월비 16억5,000만원과 대화상수도 취수원 포장의 2건의 사고이월비 1억4,600만원으로 대부분 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 되었으나 진부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 명시이월은 도비보조금 보조금 7억5,000만원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의 확보없이 명목상으로 이월처리 된것으로 걱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됨.
- 예비비 사용은 없음
-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국내차입금 이자 및 원리금상환에서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지방채상환 계획등 사업추진에 대해 걱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운영특별회계 총예산액의 72%가 불용처리 된 것은 예산편성의 본래 목적과 건전재정운영에 역행하는 처사라 판단됨.
- 기타 의료보호기금, 농공지구조성및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결산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

질의 · 서면 답변서

질 의	우 강 호 위 원	답 변	평 창 군 수 (사회과장)
회 의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예결1차 ('95. 12. 4)		
<p><질의요지></p> <p>생활보호적립기금 대장비치와 기금출납명령판 출납공무원 임명에 따른 서류 제출</p>			

<답 변>

- 생활보호적립기금 대장 비치 ——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 사본
- 평창군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 사본
-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당연직)

현금출납부

98년 월 일	직 요	결의서번호	채 주	수입금액 (1)	지출금액 (2)	차인잔고 (1-2)
5-24	생물자재비 (생물자재비) 228~43-00024) 10000			12591082		12591082-
				12591082		
12-30	생물자재비 (생물자재비) 228~43-00024) 10000			12591082		12591082-
				861510		13452592
				861510		
				13452592		13452592

1

지 급 내 역 부

생활보조기금 적립금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91년	월일	적요주	채예산 배정액 ①	지출원인 행위액 ②	배부예산 잔액 ①-②	전도자금 수령액 ③	지급액 ④	자금잔액 ③-④	
		5-24 생활보조기금적립금 (24-43)				12591082		12591082	
		계				12591082			
		12-30 생활보조기금적립금 이자				12591082		12591082	
		계				861610		13452692	
		계				861610			
		계				13452692		13452692	

평창군수		귀하
계좌번호	228-43-000234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225-83-0000903 (실명확인필)	

00	
22. 05. 24	22. 05. 24



발행일 95년 05월 24일
 만기일 95년 05월 24일

발행처 평창군청<출>

주최처 평창군청<출>

전화번호 (0374)032-3540

농협중앙회



세금우대번호	
적립일	24
신탁기간	12개월
원본교부일	96.05.24

지정수익자	성명	평창군수
	주민등록번호	022583-0000903

알찬모아신탁



일련 번호	발행 일자	과목 명칭	입 금 금 액	입 금 부 계	과 목 구 분	계 량 단 위
1						
2						
3	95-05-24	1	12,591,082	#12,591,082	신규	228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1982 . 2 . 16]
조례 제728호 전문개정

개정 1984·1·7 조례 제 889호
1988·7·22 조례 제1125호
1990·1·18 조례 제12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생활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4·1·7>

제2조(기금) 기금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지방세수입액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 은행채매입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예입금에서 생기는 수입금은 이를 적립금에 편입한다.

③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군수는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질 의 · 서면답변서

질 의	우 강 호 위원	답 변	평창군수(기획실장)
회 의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예 결	1차특위('95. 12. 4)
<p>< 질의요지 ></p> <p>이상 저온현상 피해작물 대파지원과 벼 물바구미 대파 지원에 관한 강원도의 지침</p>			

< 답 변 >

- 우강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강원도의 지원계획은 별첨과 같습니다.

(5.19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특별지원계획 별첨)

강 원 도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전화(0361)57-5104/ 전송(0361)54-2011/담당 이상훈

문서번호 농산51196 - 07기

시행일자 1994. 6. 9. (3년)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산업·광산과장

선결	근우	김민	지	
접	일자	1994. 6. 10	시	
	시간		결	무근우
수	번호	6P63	재	과장
처	리	관영관	공	
담	당	장	람	계장

제 목 5.19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특별지원 계획 시달기침상사 피해농가

1. 지난 5. 19 내습한 저온 현상으로 농작물 냉해피해가 발생되어 피해복구 및 자체지원 계획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2. 도 자체로 피해 농가에게 대파대를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지원계획을 시달 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토록 하고,
3. 피해농가간에 물의가 없도록 마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기 바랍니다.

붙 임 :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도 자체 지원계획 1부. 끝.

강 원 도 지

농정국장전결



수신처 : 더(5, 8, 9, 10, 12, 13, 14, 17, 18, 22)

農作物 冷害被害農家 道自體 支援計劃

1. 目 的

- 본 지원은 농작물 냉해피해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소생 불가능한 면적에 한하여 대파대를 지원함으로써
- 피해농가의 사기진작과 영농의욕 고취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2. 被害現況

- 피해일시 : '94. 5. 19
- 피해지역 : 태백시 등 9개 시군
- 최저기온 : -2℃ - -5℃
- 정밀조사 : '94. 5.20 - 5.29 (10일간)
- 작물별 피해면적

작물별	총피해면적	소생가능	소생불능	대파 추진 상황	
				대파실시	금후실시
계	5,013.1ha	(90.6%) 4,541.3ha	(9.4%) 471.8ha	(95.4%) 450.0ha	(4.6%) 21.8ha
고 추	757.9	383.1	374.8	369.4	5.4
감 자	3,193.9	3,189.5	4.4	2.3	2.1
옥수수	680.3	663.1	17.2	11.6	5.6
콩	77.8	73.4	4.4	4.0	0.4
채 소	127.2	75.6	51.6	45.8	5.8
기 타	176.0	156.6	19.4	16.9	2.5

3. 支援計劃

- 지원대상 : 소생불능면적 대파대 지원(고추 및 기타작물 포함)
- 대상면적 : 471.8ha
- 지급방법 : 피해 농가별 대파 실적에 의거 지급
- 재 원 : 도 및 시군 예비비
- 지원액

면 적	소 요 액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ha	천원	(25 %)	(25 %)	(50 %)
471.8	415,184	103,796	103,796	207,592

※ 지원기준 : 중앙 농업재해 대파대 지원기준
 ha당 880천원 (보조 440천원, 자부담 440천원)

- 시군별 지원내역 : 별첨

4. 支援要領

- 본 지원금은 복구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지급기간 : '94. 6. 18까지
- 마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조정 피해 농가간의 물의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 조치

시군별 지원 계획

구분 시군별	지원대상 면적	소요액	재원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471.8 ha	415,184 천원	(25%) 103,796	(25%) 103,796	(50%) 207,592
태백시	14.0	12,320	3,080	3,080	6,160
춘천군	12.3	10,824	2,706	2,706	5,412
홍천군	111.4	98,032	24,508	24,508	49,016
횡성군	38.8	34,144	8,536	8,536	17,072
영양군	168.2	175,928	46,982	46,982	93,964
정선군	60.2	52,976	13,244	13,244	26,488
양구군	5.5	4,840	1,210	1,210	2,420
인제군	46.4	40,832	10,208	10,208	20,416
삼척군	15.1	13,288	3,322	3,322	6,644

관인생략

강 원 도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전화(0361)57-5104/ 전송(0361)54-2011/담당 이상훈

문서번호 농산51196 - 0776

시행일자 1994. 6. 18. (5년)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산업·광산과장

제목 5.19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대파대 지원 교부

선결	과장	지	
접	일자	1994. 6. 20	지
수	번호	0347	결
처	리과	산업과	재
담	당자	정혜정	공
			람

1. 관련 : 농산 51195 - 0737 ('94. 6. 9)

2. 5. 19 농작물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대파대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시장. 군수는 자금 수령 즉시 지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건 명 :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대파대 지원

나. 교 부 금액 : 일억삼백칠십구만육천원 (₩103,796,000)

다. 금회교부액 : 일억삼백칠십구만육천원 (₩103,796,000)

라. 교 부 처 : 태백시장외 8개 시장,군수

마. 지 출 과목 :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농산관리, 식량증산, 301-1

붙 임 : 시군별 일상경비 교부내역 1부. 끝.

강 원 도 지 사

수신처 : 더(05, 08, 09, 10, 13, 14, 17, 18, 22)

시군별 일상경비 교부 내역

(단위 : ha, 천원)

구분 시군별	지원대상 면적	교부결정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계	471.8	103,796	103,796	-
태백시	14.0	3,080	3,080	
춘천군	12.3	2,706	2,706	
홍천군	111.4	24,508	24,508	
횡성군	38.8	8,536	8,536	
평창군	168.1	36,982	36,982	
정선군	60.2	13,244	13,244	
양구군	5.5	1,210	1,210	
인제군	46.4	10,208	10,208	
삼척군	15.1	3,322	3,322	